#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1

발의연월일: 2021. 3. 31.

발 의 자:김승남・이용빈・양경숙

황운하 · 강득구 · 김승원

유재갑 • 박완주 • 안규백

이수진(비) · 양정숙 · 신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함.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10조제1 항제9호 및 제59조제1호 신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3(농업경영확인증명의 발급) 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제 8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후 5년 동안 매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농업인확인서
  - 2. 경영확인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시설
  - 3. 경영확인 대상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제5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 영확인증명을 발급받은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확인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부터 5년 동

안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

1. ~ 8.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청 및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3제1
항에 따른 농업경영확인증명
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_\_\_\_\_

\_\_\_\_\_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은 <u>자</u>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